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54

발의연월일: 2021. 11. 19.

발 의 자:남인순·김성주·정필모

강선우・윤미향・권인숙

김상희 · 송재호 · 이용선

정춘숙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 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 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동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 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 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제입양"은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자가 입양하여 아동이 상거소를 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외국으로의 입양과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입양하여 아동이 상거소를 국내로 이동하게 되는 국내로의 입양으로 구분됨(안 제2조).
- 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한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조 및 제4조).
- 라.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5조).
- 마. 외국으로의 입양 시 양부모가 될 사람은 수령국 중앙당국등에 입양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령국 중앙당국등은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7조).
- 바. 외국으로의 입양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수 경국 중앙당국등에 송부하여야 함(안 제9조).
- 사. 국내로의 입양 시 양부모가 될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함(안 제12조).

- 아. 국내로의 입양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함(안 제13조).
- 자.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 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6조).
-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상 아동을 말한다.
- 2. "출신국"이란 양자가 될 아동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 3. "수령국"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 4. "중앙당국등"이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이하 "중앙당국"이라 한다)과 협약 비체약국에서 입양을 관장하는 부처 또는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 5. "국제입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을 말한다.
 - 가. 외국으로의 입양: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자가 입양하여 아동이 상거소를 외국으로 이동

하게 되는 형태의 입양

- 나. 국내로의 입양: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대한민국에 상 거소가 있는 사람이 입양하여 아동이 상거소를 국내로 이동하 게 되는 형태의 입양
- 6. "결연(結緣)"이란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본국"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적국을 말한다.
- 8.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란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 동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국제입양의 원칙) ①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 ② 국제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양자가 될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존 중되어야 하며, 국제입양이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의 수단으 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국제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은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앙당국) 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 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민법」 및 「입양특례법」과의 관계) 국제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양특례법」을 적용하고,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 제7조(외국으로의 입양 신청 등) ①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이법 및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제15조에 따라 수령국 중앙당국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수령국 중앙당국등이 협약 제15조에 따라 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면 「입양특례법」 제14조에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양특례법」 제18조에 따른 입양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외국으로의 입양 시 아동에 대한 보고서의 송부)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입양대상아동과 신청인이 결연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해당 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령국 중앙당국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등에 대하여 입양절차 중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양자가 될 아동이나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 2. 결연된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3.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제9조(외국으로의 입양 시 아동의 인도) ① 외국으로의 입양에서 아동의 인도는 「입양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을 받은 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전제위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의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수령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동의 국적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 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의 위기 지원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 2.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지원
- 3.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입양정보 공개 청구)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 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 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 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1촌 이내 직계비속(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자신의 직계존속과 관련된 정 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의 방법,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절차 및

-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양특례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입양특례법」에 따른 절차 적용) 외국으로의 입양에 관하여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양특례법」을 적용한다.

제3장 국내로의 입양

- 제12조(국내로의 입양 신청 등)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이법에 따라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국내로의 입양 시 양부모 될 사람에 대한 조사)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을 조사 하여 「입양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 지를 확인한 후 양부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의 정보를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4조(국내로의 입양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약 제16조에 따라 출신국 중앙당국등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의 보고서를 수령한 후 제12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입양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

양절차의 진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 1.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2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한 경우
- 2. 양자가 될 아동이나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 3. 양자가 될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4. 양부모가 될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5.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제15조(입양의 성립) ① 국내로의 입양은 출신국 중앙당국등의 승인으로 성립된다. 다만, 해당 국가의 법률에서 법원의 허가 등 입양 성립을 위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양 성립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입양특례법」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16조(사후서비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출신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제1항의 아동 적응 보고서 작성 외에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중앙당국과 협

의하여 요청에 응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위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입양의 취소 및 파양

- 제17조(입양이 취소된 아동에 대한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해당 아동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로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출신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8조(파양에 따른 보호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의 입양이 성립된 아동이 수령국에서 파양된 경우에 수령국 중앙당국등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로의 입양이 성립된 아동이 파양된 경우에 출신국 중앙당국등에 그 취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국제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0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약 체약국과 이루어진 입양에 대하여 협약 제23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 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구체적 내용,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외국과의 협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당국등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를 위반하여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아동을 인도한 자
 - 2.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신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해당 국가

- 의 법률에서 법원의 허가 등 입양 성립을 위하여 규정한 특별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 3. 제19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이 있었던 아동의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종전의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